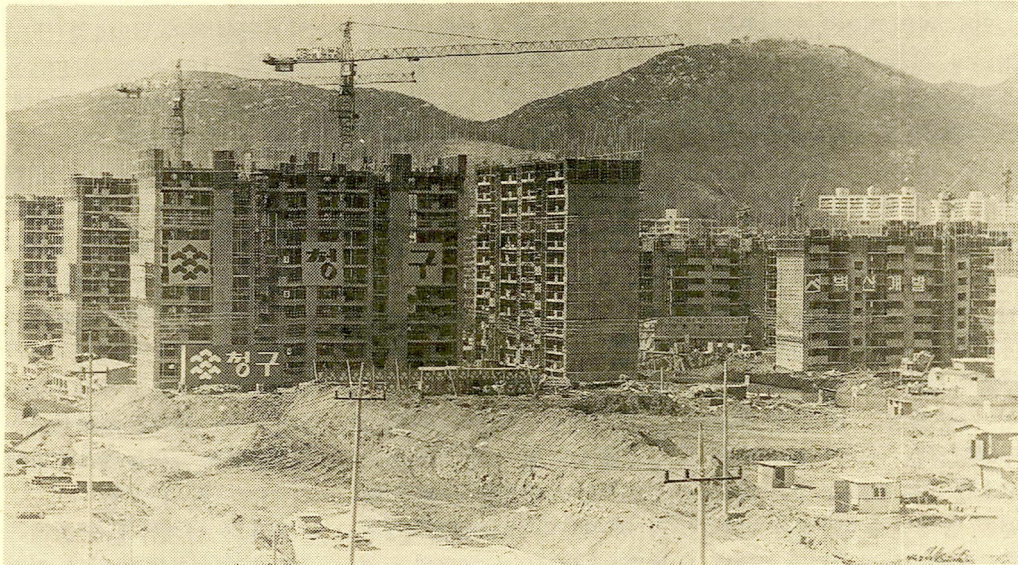


아파트 관리, 여성은 나설 자격 없다?

주거생활 가장 밀접하나 법적 권한 없어, 입주자 대표자격규정 개정돼야



▲ 주거생활과 가장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 여성들이 동대표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아파트 관리를 둘러싼 비리가 속출하고 있다. 모르고 있으면 속을 수밖에 없는 제반문제점들을 짚어보고 대안책을 제시해본다.

〈편집자 주〉

주부들이 동대표가 될 수 없음으로 인해 문제점들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 하자보수, 물탱크 청소에 이르기까지 살림을 전문으로 하는 여성들의 손길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여성에게 권한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요구안을 내놓아도 시행되지 않고 있다.

공동주택 관리령에 여성은 동대표가 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관리령 10조2항에 따르면 '6개월 이상(최초의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동별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거주한 입주자'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관행상 주택의 소유자가 대부분 남자기 때문에 여성들의 입주자 대표자격이 봉쇄된다.

실제로 주거문제의 핵심을

알고 있는 사람은 여성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력투구할 수 있는 사람도 직장생활을 하는 남성보다 여성이 더 적격이다. 아파트의 경우 입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다. 시공회사에 하자보수를 요구했지만 계속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다. 입주자대표회의에 이 안을 정식으로 상정했지만 해결되지 않자 주부들이 관리소장실에 강력히 항의하고 최초 설계도나 공사 시방서 상의 엘리베이터 규격과 같은 것인지 밝힐 것을 요구했다. 설계도대로 시공하지 않아 고장이 발생하는 것이라면 시공 회사를 형사고발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런 주부들의 압력은 관리소가 시공회사에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기에 이르렀고 고장이 해결됐다.

아파트 주거생활을 연구하고 개선하는 시민모임(대표 심현철, 노원구 구의회의원)에서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공동주택관

리령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공동주택관리령의 입주자 대표자격 규정을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아파

트 소유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 시민모임은 이와 함께 주민의식 갖기운동도 동시에 전개하고 있다. 주민의식 갖기 운동은 가족이기주의의 팽배와 무관심 등으로 대변되고 있는 아파트 풍토를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는 여성들 중심으로 '이웃'이라는 개념과 '공동주민'이라는 인식으로 전환시켜 주거 환경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실제로 이런 관심사는 관리소가 주민들의 무관심을 이용해 계량기의 기록과는 달리 요금을 부당하게 책정하는 등의 횡포를 동 별로 비교분석해 봄으로써 예방할 수 있는 기능을 갖는 등 아파트의 행정 지도감독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